



카드 매출 전표

CARD SALES SLIP

[고객용]

카드종류/CARD TYPE		카드번호/CARD NO	
신한일반		9410-6440-****-2136	
고객명		거래일시/TRANS. DATE	
서울특별시		2019-03-28 16:25:59	
일반	할부	유효기간	승인번호
일시불	0		33411158

이용상세정보		이용금액							
가맹점명	(주)KB손해보험	금액 AMOUNT			백	천	원		
사업자등록번호					7	1	0	0	0
202-81-48370		부가세VAT						0	
대표자명	양종희	합계TOTAL			7	1	0	0	0
전화번호	1544-0114								
주소/ADDRESS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KB손해보험빌딩									
승인점	E000240(SME1지점)	취급자	2054051(손해보험전문영업)						

할부거래계약서

제1조 (할부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의 실제 년간요율은 (표1)과 같다.

제2조 (목적물의 인도등) 목적물의 인도는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철회권) 회원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 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철회요청 한 경우에 가맹점원 철회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제출(발송)함으로써 할부거래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상품의 성질 또는계약체결의 형태를 보아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 귀책사유에 의해 상품의 멸실, 훼손된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의상품인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

제4조 (회원의 항변권) 할부구매에 대한 분쟁에 있어 할부거래에관한법을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신용제공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상행위 목적의 거래나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이외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회원의 기한이익 상실) 회원은 할부금을 2회이상 연속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회원의 소유권 유보) 회원은 할부계약 종료전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7조 (가맹점의 할부계약 해제) 가맹점이 회원의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또한 소유권이 가맹점에 유보된 경우에 가맹점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특약사항) 신용카드업자 상호간 업무 제휴계약에 따라 매출표 전면에 표시된 카드발급사가 우측의 신용제공자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발급사를 신용제공자로 본다.

비씨카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7	년13.7~22.9%	신한카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년14.9~21.9%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년11.0~21.4%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년11.5~21.9%
현대카드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5-21	년9.0~20.9%	삼성카드	서울 중로구 연지동 1-7	년10.0~21.8%
롯데카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	년12.0~20.0%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년10.9~19.5%

철회, 항변 요청서

구매일자	금액	회원번호	철회, 항변 요청일
구매장소	철회, 항변 요청사유	회원성명	(인)
구매품목	(구체적 기재)	전화번호	년 월 일



카드 매출전표

CARD SALES SLIP

[보관용]

카드종류/CARD TYPE		카드번호/CARD NO	
신한일반		9410-6440-****-2136	
고객명		거래일시/TRANS. DATE	
서울특별시		2019-03-28 16:25:59	
일반	할부	유효기간	승인번호
일시불	0		33411158

이용상세정보		이용금액					
가맹점명		금액 AMOUNT			백	천	원
(주)KB손해보험					7	1	0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VAT					
202-81-48370							
대표자명	양중희	합계TOTAL			7	1	0
전화번호	1544-0114					0	0
주소/ADDRESS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KB손해보험빌딩							
승인점	E000240(SME1지점)	취급자	2054051(손해보험전문영업)				

할부거래계약서

제1조 (할부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의 실제 연간요율은 (표1)과 같다.

제2조 (목적물의 인도등) 목적물의 인도는 할부거래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철회권) 회원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 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철회요청 한 경우에 가맹점장 철회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제출(발송)함으로써 할부거래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상품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를 보아 철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회원 귀책사유에 의해 상품의 멸실, 훼손된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의 상품인 경우에 철회할 수 없다.

제4조 (회원의 항변권) 할부구매에 대한 분쟁에 있어 할부거래에관한법을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신용제공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상행위 목적의 거래나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이외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회원의 기한이익 상실) 회원은 할부금을 2회이상 연속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할부금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회원의 소유권 유보) 회원은 할부계약 종료전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7조 (가맹점의 할부계약 해제) 가맹점이 회원의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경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또한 소유권이 가맹점에 유보된 경우에 가맹점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특약사항) 신용카드업자 상호간 업무 제휴계약에 따라 매출표 전면에 표시된 카드발급사가 우측의 신용제공자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발급사를 신용제공자로 본다.

비씨카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7	년13.7~22.9%	신한카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년14.9~21.9%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년11.0~21.4%	외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년11.5~21.9%
현대카드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5-21	년9.0~20.9%	삼성카드	서울 중로구 연지동 1-7	년10.0~21.8%
롯데카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	년12.0~20.0%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년10.9~19.5%

철회, 항변 요청서

구매일자	금액	회원번호	철회, 항변 요청일
구매장소	철회, 항변 요청사유	회원성명 (인)	
구매품목	(구체적 기재)	전화번호	년 월 일